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창 녕 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복지과 성명 최태진 연락처: 055-530-1126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사업 유형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082)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급여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건강보험료 지원)				
Ħ TI	주기	□ 일주일☑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12_회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신청없음 □ 기타()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전달 체계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복지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비율 <u>100</u> %				
재원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비율%				
지원규모		총 1,843 가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2021. 1. / 2020. 10. 26				
제도 신설 필요성 관련규정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 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는 건강생활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사업	목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성괴	-지표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수				
7] 0]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부과금 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지원 대상	대상규모	(단위:세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대 수 1,843				
지원	지원유형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 험료지원				
내용	지원수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20년기준: 15,410원)이하인 1,843세대				
	지원절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시 검토 후 지급				
전달 체계	수행기관	○신청기관: 공공기관 ○조사·결정기관: 군청 ○급여(서비스)제공기관: 군청				
소요 재원	총규모	(단위:세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62,096 군 비 162,096				
	재원별 규모	O재원부담비율: 군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필요 정보	O해당없음				
활용	연계 방안	O해당없음				

3. 사업의 타당성

O 신설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는 건강생활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O 지역의 특수성

「2020.9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65세이상노인(a)	등록 장애인(b)	총인구(c)	비율 (%)
一		등록 경에인(D)	중인구(대)	a+b/c*100
창녕군	18,925	5,466	61,478	39.6%
경상남도	573,691	188,667	3,343,770	22.7%
전국	8,395,869	2,631,719	51,841,786	21.2%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참조

- 창녕군은 65세 노령 및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경상남도 및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높음.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봄.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 경상남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개정 현황 및 지원대상

(2020.10월 현재)

시군별	조례 개정일자	개정내용	지원대상	비고
창원시	2019.02.15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가장	
진주시	2019.06.10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통영시	2019.10.16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사천시	2018.08.13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가장	
김해시	2018.12.28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밀양시	2018.11.02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소년)	
거제시	2018.11.29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양산시	2019.07.01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의령군	2019.01.30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함안군	2019.09.20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기타	
고성군	2019.01.20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남해군	2018.11.19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소년)	
하동군	2018.12.27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산청군	2019.03.19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소년)	
함양군	2019.03.14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거창군	2019.01.30	최저보험료	노인, 장애인, 한부모	
합천군	2019.02.26	최저보험료	노인	

-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부과금액이 월별 보헙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2020년도 기준 15,410원)

(단위: 천원)

구분	대상자 기준	소요 예산액	월평균 지원 금액	지원세대 수	비고
2020	저소득 65세이상노인, 장애인중 월 건강보험료 10,000이하 납부 세대	96,000	7,484	1,477세대	
2021	저소득 65세이상노인, 장애인중 월 건강보험료 15,410이하 납부 세대	162,096	13,508	1,843세대	

-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 2019년 재정자립도: 9.98%

(단위:%)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9.98	571,422	57,000	435,650	0	78,772
(23.76)	(571,422)	(135,772)	(435,650)	(0)	(0)

- 2019년 재정자주도: 55.55%

(단위: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 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55	571,422	317,443	175,207	0	78,772
(69.34)	(571,422)	(396,215)	(175,207)	(0)	(0)

- 2019년 사회보장예산(비율): 24.53%
- O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소요재원 추계(전액 군비)

- 매년 고시되는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
- 본 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제도의 예산 변경은 없음.
- 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 지방매칭비 등에 부정적 영향 없음.

7. 참고자료

○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참고자료-1)

(참고자료-1)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2006.05.15 조례 제1834호 (일부개정) 2008.11.25 조례 제1940호 (일부개정) 2010.08.31 조례 제2006호

(일부개정) 2015.08.0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2016.12.30. 조례 제2322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

정 조례

(전부개정) 2020.03.03 조례 제2513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530-1122~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소득주민"이란 창녕군에 거주하는 「<mark>의료급여법</mark>」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mark>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mark>」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한다.

-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조사실시 등)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 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13호, 20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